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반영 및 위원회 목적·기능 등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다 명확하고 쉽게 규정하여 군의 주요 정책 및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등을 통해 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안 제2조제1항～제5항)
○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함(안 제3조, 4조)
○ 의안제출을 회의개최 3일 전으로 함(안 제6조)
○ 대리참석에 대한 규정을 명시(안 제7조)
○ 간사 및 서기의 사무처리 규정 명시(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입법예고: 의견없음(2016. 9. 1. ~ 2016. 9. 21.)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기능)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에서 결정사항인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농촌공장 유치 심의, 공유재산심의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 현재 조정위원회 운영과 맞지 않은 조문들을 삭제하여 13개항에서 5개항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5조(회의)에서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안 등은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안 제출)에서는 현 조례에서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의안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대리참석)에서는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선하여 능동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통해 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성주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각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정비(지번 주소→도로명 주소)【안 제1조~4조】
: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외 3개 조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안 제4조~8조】
: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외 4개 조례(10개 서식)

○ 기타 상위법 명칭·용어·인용조문 등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8조~21조】
: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외 13개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및「도로명 주소법」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입법예고: 의견없음(2016. 9. 8. ~ 2016. 9. 28.)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도로명주소법 관련 도로명 주소 미반영 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정비 등 주민불편 해소,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명칭·용어·인용조문 변경사항 등 단순 변경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외 13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재정비하고「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성주군 청사도서관 설치 조례 외 3개 조례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 외 4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식 등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 법제처와 연계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입법기술상·편의상 각 조례의 개정 취지가 동일한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법령안에 모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조례 개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